

# 正祖年間の 私刻曆書發賣事件 研究\*

A Study on the Case of Private Printing and Distributing of Calendar in the Reign of Jeongjo

김 상 호 (Kim, Sang-Ho)\*\*

## ◁ 목 차 ▷

1. 緒 論	4.1 李罷伊
2. 私刻曆書發賣事件의 概要와 爭點	4.2 全致學
3. 冊曆發行의 制度的 狀況	5. 治罪事實
4. 李罷伊와 全致學의 王室使役 活動	6. 結 論
	<참고문헌>

## < 초 록 >

정조 말기에 편찬된 『심리록』에는 관상감의 자격장 이똥이가 주도한 사각역서 발매 및 인신위조 사건인 ‘이똥이옥’, 일명 ‘사각역서발매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형률에 따라 참형에 처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거듭된 주청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책력도고를 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각수가 인신을 위조했을 것이라는 정황근거를 들어 이똥이를 살려 준다. 당시 책력발행제도를 고려하면 ‘사각역서발매사건’은 발생자체가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책력발행은 관상감의 독점사업이었고, 그 판매수익으로 이듬해 책력발행비용과 관상감 소속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했다. 책력을 사사로이 간행하거나 관인이 찍지 않은 책력을 소지한 자는 위조인신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왕실의궤들을 살펴보면 이똥이는 다재다능한 기능을 지닌 장인으로 사건 당시 이미 고령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전치학은 교서관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중견의 각수였음을 알 수 있다. 관상감의 이숙들이 책력을 판매했고, 과도한 인출로 책력의 인쇄상태가 불량했다는 사실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관례적인 일이 도고설치로 인해 사건으로 비화했고, 소수 장인이 그 벌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

要語: 책력, 이똥이, 전치학, 관상감, 심리록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6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e case of private printing and distributing of calendar, what we called, was collected in *Simrirok* and it was composed of contents that Lee Ttong-i as a craftsman led the private publishing of calendar and fake seal. In spite of several requests by loyal retainer, Jeongjo (正祖) spared his life, for the reason it occurred before setting up the another exclusive sale system and for the circumstantial evidence. Understanding about the calendar publication system of the period of 18 century in Choseon dynasty, the case of Lee Tong-i has some doubtful points. Kwansanggam monopolize the business of the calendar publication through the nationwide and pay the money like costs of publication and personnel expenses. The people who were against the law should be punished with beheading based on the law about fake seal. A number of records of Uigwe (의궤) reveal the facts that Lee Ttong-i was a old and talented craftsman, also Jeon Chi-hak had a experienced engraver at Kyoseogwan (校書館). Taking consideration of the facts that petty official sold the calendar to the people, the printed calendar books were too dirty to read because they were imprinted too much. Eventually, it is obvious that customary events was changed to criminal case and old and sick craftsmen probably were falsely accused.

Key words: calendar, Lee Ttong-i, Jeon Chi-hak, Kwansanggam, *Simrirok*

## 1. 緒論

정조 23년(1799)에 편찬된 『審理錄』은 정조 1년(1777) 정월에 발생한 ‘李罷伊獄’ 일명 ‘私刻曆書發賣事件’을 수록하고 있다. 그 요지는 한양 북부에 사는 자격장 이똥이가 각수 전치학을 시켜서 관인을 위조하고 책력을 사사로이 간행하는 중죄를 범했는데, 정조가 그의 죄를 경감하여 징배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私刻曆書發賣事件은 당시의 책력 발행제도와 주범인 이똥이의 장인으로서 활동 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치죄과정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범죄로만 이해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

조선시대에 하늘의 변화와 때를 알리는 曆象과 授時는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대한 일이었다. 관상감은 그 일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책력을 독점적으로 발행했고, 책력의 판매수익으로 이듬해 책력의 발행비용과 관상감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책력을 사사로이 간행한 자, 또는 관인이 찍히지 않은 책력을 소지한 자는 僞造印信律에 따라 처벌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관상감의 소수 장인이 참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사건 발생 후 당시 사각역서의 발매행위가 관계적인 일였고, 인신의 위조는 각수 전치학이 감당했을 것이라는 정황근거를 들어서 주범인 이똥이를 살려준다. 정조가 인자한 군주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조연간에 발생한 私刻曆書發賣事件의 진실을 보다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먼저 형태서지학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하고, 당시 책력발행의 제도적 상황을 점검하며, 의궤의 기록을 통해 관련자들이 장인으로서 왕실사역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죄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私刻曆書發賣事件의 概要와 爭點

私刻曆書發賣事件은 『審理錄』에 그 개요가 기술되어 있으나, 정조의 관점에서 사후 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건의 발생경위에 대해서는 『承政院日記』의 기사가 보다 구체적이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형조 계목에 이르기를 서울에 사는 이똥이와 이똥개, 김치학, 신성득 등이 인신을 위조하고 역서를 사사로이 관각하여 발매를 어지럽힌 일로 좌우포도청이 이문을 보내왔다. 심문하고 공초를 받은즉 각수장 김치학은 병으로 죽었고, 자격장 이똥이와 이똥개는 관아에 내야 할 포함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감히 한번 죽어 마땅한 피를 내어 치학으로 하여금 책판과 인신을 새기게 하고, 사사로이 만든 책력을 시중에 내다 팔았으나, 인신 하나를 위조한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공초를 냈다. 신성득은 관상감의 인출장으로 처음에는 그것이 사사로이 만든 것인 줄 모르고 값을 받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사사로이 만든 것임을 알았지만, 값을 환급하기가 어려워 인출하게 되었고, 인신을 위조한 이유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실로 지극히 원통하다는 공초를 냈다. 이똥이가 인신을 위조하고 역서를 사사로이 만든 죄를 이미 승복하였는바, 이똥개와 신성득은 원범의 결말을 아울러 기다린 후에 율문에 따라 처단할 것을 여쭙었다.<sup>1)</sup>

해당 기사를 통해서 각수 전치학(또는 김치학)으로 하여금 책력과 인신을 관각하도록 교사한 사람은 이똥이와 이똥개 두 사람이고, 이똥이와 신성득 두 사람은 사사로이 역서를 간행하는 것보다 인신을 위조하는 것이 더 위중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책력의 사사로운 간행이 관상감의 일부 인원을 통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1) 『承政院日記』 正祖 1年 2月 28日.

“刑曹啓目 京居李靛伊李靛介金治學申成得等 僞造印信私刻曆書 爛熳發賣事 因左右捕廳移文 發問目取招 則刻手匠金治學段 因病物故 自擊匠李靛伊李靛介段 官錢浦負無路備納 敢生萬死之計 使治學刻板刻印 私造曆書出賣市上是乎矣 僞印自刻一款 實爲曖昧是如納供 申成得段 以本監印出匠 初不知其私造 而捧價同役 末乃知其私造 而難於雇價之還給 仍爲印出是乎矣 同情僞造一款 實爲至寃是如納供 李靛伊僞造印信 私造曆書之罪 既已承服 李靛介申成得 竝待元犯結末後 依律文勘處 何如.”

사건의 관련자들 가운데 이똥개는 다른 장인들과 달리 왕실사역에서의 그의 활동사실이나 처벌에 관한 여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사건 초기에 공범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드러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명이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각수 전치학과 각수 김치학을 동일인물로 간주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수 없다. 참고로 『日省錄』의 관련 기사를 보면, 각수 김치학은 앞부분에서는 각수 전치학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sup>2)</sup> 나중에 살펴볼 여러 왕실의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거듭된다. 따라서 각수 전치학과 각수 김치학은 단순한 誤記의 한 예이며, 이들을 동일인물로 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장인의 경우에 동일인물의 여부, 또는 동명이인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동료 장인의 명단, 즉 工匠秩의 기입순서가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각수 전치학이 사사로이 새겨낸 책판의 우열, 그리고 인출장 신성득이 사사로이 찍어낸 책력의 다과에 대해서는 형태서지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신성득이 책력을 인출할 때 사사로이 만든 책판임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과연 그러했는지 의문이지만, 전치학이 사사로이 새긴 책판의 상태가 공식적인 책판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진술은 처음부터 신뢰할만한 것이 못된다. 형태적으로 책판의 우열을 가리고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야만 사사로이 찍은 책력을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관상감의 관인을 찍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생긴다. 책력의 형태, 판식이나 글자의 크기 등에서 공식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상호간에 차이가 난다면, 사사로이 새긴 책력임이 바로 드러나는 까닭에 애당초 무리하게 관상감의 관인을 위조하고 날인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사사로이 책판을 만들어서 관상감의 인출장에게 그 인출을 맡겼다는 사실은 책력의 인출부수가 소량이 아닌 대량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2) 『日省錄』 正祖 1年 2月 28日.

“全致學 申成得等 僞造印信 私刻曆書 發賣事 因捕廳移文 發問目取招 則刻手匠 金致學 因病物故.”

한다. 소량이라면 책판을 한 벌 더 새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책판을 훼손하기 전에 濫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수월했을 것이다. 현전하는 당시 책력들을 보면 비록 책판을 단단한 배나무로써 두 벌을 마련했지만, 각기 십오만 부 이상을 찍다보니 목판의 완결이 심해져서 나중에 찍은 책력들은 가독성이 크게 떨어진 다. 상품성이 좋지 않은 그런 책력을 민간에 판매해서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책력의 사사로운 간행이 비공식적이거나 관례였고, 배포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세 사람의 장인, 자격장 이똥이, 각수 전치학, 인출장 신성득이 작당해서 감히 피할 수 있는 행위였고, 취할 수 있는 이익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감당한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느 문헌에도 그 실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私刻曆書發賣가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당시 관상감의 관원과 서리의 개입 내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똥이, 전치학, 신성득이 해당 사건의 희생양은 아니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 3. 冊曆發行的 制度的 狀況

영조연간에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는 책력은 그 수가 얼마나 적당한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획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다투어 인출해낸 까닭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가격도 제멋대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조 38년(1762)에는 진헌 및 반사를 제외하고 관상감에서 인출하는 책력의 건수를 1만 3백 축으로 정한 바가 있었다.<sup>3)</sup>

3) 『書雲觀志』 式例 96.

“各司分兒 則隸籍雲臺者 轉相賣買 便作場圃 又質紙私印 聊以滋貨 凡京外頒行之曆 雖不如戶數之有常 亦可量幾件之中用 而當初私印之時 不謀其數 唯利是競 多寡不中 貴賤靡常 英宗壬午 金時默提舉 本監進獻頒賜外 以一萬三百軸定爲恒矩.”

위의 『書雲觀志』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상감의 하인들이 임의로 구역을 정해놓고 종이를 구해다가 사사로이 인쇄를 해서 쉽게 재화를 불리는 형국은 15년 뒤 이똥이가 사사로이 책력을 간행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와 유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후자가 책력의濫印에 그치지 않고 책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자 했으니, 행동이 더 대담해졌다고 할만하다.

영조 42년(1766)에 영관상감사 홍봉한은 어지러운 책력의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印曆所를 창설해서 각사의 분야가 몇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관상감 안으로 거둬들였다. 그리하여 日課廳에서 인출하는 進獻과 頒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막론하고 印曆所에서 관장토록 하였고, 그로 인해 생긴 이익으로는 三學官의 月俸을 마련하고 員役과 工匠, 僕隸이 일정한 값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sup>4)</sup> 이때 책력을 판매해서 관상감 인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조 15년(1791)에 작성된 『辛亥啓下觀象監釐正節目』을 참고하면 관상감에서 찍어낸 책력은 進獻과 分兒, 私件을 포함해 모두 15,300軸이었다. 책수로는 삼십만 권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전체 가구를 1백 7십만 호로 산정하면 여섯 가구에 한 건 정도가 배정되는 분량이다. 관상감이 책력을 많이 찍어내면 너무 흔해져서 팔기 어렵다는 게 당시 관상감의 입장이었으므로 인출량이 너적하지는 않았던 게 분명하다.<sup>5)</sup>

사건이 발생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책력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책력을 구입하기 어려운 가난한 백성의 경제 사정도 한 원인이 되었겠지만, 특히 외방의 경우 單曆의 사용이 만연했다. 영조 34년(1758)의 『承政院日記』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의 양반 집안은 정식의 책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민의 경우는 단지 單曆만을 소유했었음이 드러난다.<sup>6)</sup> 정조 23년(1799)의 『承政院日記』를 보더라도

4) 『書雲觀志』 式例.

“卍置印曆之所 盡刷各司分兒之散在幾人者 給價入官 日課廳所印進獻頒賜外 毋論公私件 皆自印曆所句管 酌取贏餘以備三學官月俸之須 以至員役工匠僕隸之屬各得恒廩.”

5) 『書雲觀志』 式例.

“過此則誠有太賤而難售.”

6) 『承政院日記』 英祖 34年 12月 29日.

도 책력의 사사로운 인출을 비록 법률로써 엄히 금하고 있으나, 외방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모르고 사사로이 만든 월력장이 낭자하게 인쇄되어 판매되고 있는 당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sup>7)</sup>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게 명약관화하더라도 현실적인 요구로 인해 지방에서는 책력의 사사로운 유통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인조 8년(1631)의 『承政院日記』를 보면, 교서관의 장인 계인이 책력을 사사로이 인쇄해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 책력에 빠진 내용이 태반이고 오자 또한 많았다고 하는데,<sup>8)</sup> 계인이 각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해당 책력은 관상감의 전문 각수가 아닌 일반 각수의 손으로 새겨진 염가판이 아니었을까 한다.

私刻曆書發賣事件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책력을 몰래 인출하는 자는 僞造印信律로 다스리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sup>9)</sup> 『經國大典』에 따르면 印信을 위조한 자는 印文이 완성되지 못하였더라도 그 벌이 참형에 해당했고, 『大典會通』에 따르면 위조 인신을 刻造한 자는 一律로써 다스리게끔 명시가 되어 있었다.<sup>10)</sup>

그리고 흥봉한의 건의에 따라 영조 45년(1769)에는 진헌하는 것 외에各司에 분야하는 것과 관상감의 私件은 모두 答인을 하고, 혹 答인이 없는 책력을 소지하

---

“上下詢賤臣曰 汝則在鄉 鄉之曆書貴耶 兩班家皆有曆書乎 或但有單曆張乎 賤臣對曰 兩班家則皆有曆書 而常漢家或只有單曆張矣 上曰 單曆張足可觀一年矣.”

7) 『承政院日記』 正祖 23年 9月 13日.

“觀象監提調鄭民始 以次進伏訖 民始曰 曆書頒行 初無定限 每多雜亂之弊 自今年爲始 外方出送曆書 冬至前期二十日下送 毋敢違越事 定式 曆書私印 法禁甚嚴 而外方之人 不知法意 私造月曆張 印賣狼藉 事極驚駭 各別嚴禁之意 申飭各道 何如 上曰 依爲之.”

8) 『承政院日記』 仁祖 8年 1月 24日.

“觀象監啓曰 曆書私印 其罪莫重 而校書館匠人柱仁 欲專其利私自開刊 所印曆書 遺漏大半 誤字亦多 極爲駭愕 請令攸司 依律治罪 傳曰 拿推.”

9) 『書雲觀志』 式例.

“印曆依壬午定式 而如有潛印者 以僞造印信律論.”

10) 『經國大典』 刑典, 僞造.

“僞造印信者印文雖未成處斬.”

『大典會通』 刑典, 僞造.

“僞造印信刻造者 模畫篆文者 並以一律論.”

고 있다가 잡히는 자는 율문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기까지 하였다.<sup>11)</sup> 이러한 규정의 제정은 私刻曆書發賣事件이 발생하기 전에 책력의 수급 및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었고, 책력의 사사로운 인출이 횡행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조 말기에 취해진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조 즉위 초에도 책력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은 이어졌고, 이똥이의 사각역서발매행위가 관례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관상감의 관인을 찍지 않고는 책력을 유통시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정조는 즉위 초기에 책력의 발매와 관련하여 개혁적인 조치로 曆書都庫를 설치해서 책력의 유통을 감당토록 했다. 관아가 나서서 직접 백성들에게 책력을 판매하는 일은 보기 좋지 않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책력도고를 설치한 일 년 뒤에 정조는 曆書都庫의 설치로 인해 민간에서 오히려 책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 원인이 都庫의 성격 상 판매의 수월성 때문에 공급부수를 줄인 사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曆書都庫를 혁파하기에 이른다.<sup>12)</sup>

이똥이가 주도하여 책력을 사사로이 간행하고 인신을 위조한 이유에 대해서 정조는 단지 포흠, 즉 관아에 체납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였다. 여기서 포흠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기근이나 생활고로 인해 관아의 곡식을 빌어다 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관상감에 소속된 인원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부수만큼의 책력을 판매하고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좀 더 정상이 참작되어질 만하다.

11) 『書雲觀志』 治曆 67.

“進獻外 各司分兒 本監私件 一併踏印 或無印現捉者 依律重繩事.”

12) 『日省錄』 正祖 1年 11月 22日.

“予曰 曆書都庫之後 件數有限 鄉曲閭里之間 似不得廣布矣 國榮曰 一自都庫以後 閭里難以得見 勢所固然矣 予曰 然矣 以此之故 至有李靛潛印之舉 自官賣買已非美事 定其件數亦甚隘塞 以此以彼 亟罷都庫之名 然後可去其弊 而事面亦正矣 國榮曰 聖教誠然矣.”

#### 4. 李暉伊와 全致學의 王室使役 活動

관상감의 자격장 이똥이와 각수 전치학이 장인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에 대해서는 당대의 왕실사역에 관한 여러 의뢰를 통해서 그 일부나마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 4.1 李暉伊

현전하는 의뢰 가운데 이똥이의 이름이 보이는 가장 오래된 것은 경종 1년(1721)에 작성된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이다. 여기서 이똥이는 別工作에서 大引鉅匠으로 일했던 것으로 나온다. 해당 工匠秩을 살펴보면 ‘韓得良 等 五名 李暉伊 等 五名’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大引鉅匠은 큰끌톱을 사용하는 톱장이를 의미한다. 열 명이 두 개 조로 나뉘어 한득량과 이똥이가 각조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듯하다. 別工作은 도감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생산해서 조달하는 기구로 선공감의 관원이 監役의 일을 맡았다.

이똥이의 이름이 보이는 두 번째 의뢰는 영조 1년(1725)에 작성된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이다. 이때 그는 別工作에서 대장장이인 冶匠의 일을 맡았다. 본 의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輦輦, 玉轎, 儀仗 등의 제작을 담당한 기구인 三房의 大引鉅匠으로 이똥이(李同伊)의 이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큰끌톱장이로서 이똥이와 이똥이가 동일인물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똥이의 이름은 영조 8년(1732)에 작성된 『仁祖長陵遷陵都監都廳儀軌』에서도 나온다. 이때 그는 內別工作의 蹄刻匠이었다. 蹄刻匠은 말발굽에 대는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다. 그 뒤 이똥이는 영조 15년(1739)에 작성된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에서 이름이 나온다. 그는 이때 총융청의 장인이었다. 諡冊, 玉冊, 龕室을 만드는 三房에 소속되어 漆匠의 일을 수행했다. 이똥이는 그 뒤 영조 33년(1757)에 작성된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에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이때 큰 석물을 만들어낸 大浮石所에 소속되어 冶匠의 일을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

冶匠의 일은 앞서 이똥이가 수행한 일이기도 했다.

이똥이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나오는 의궤는 정조 즉위년(1776)에 작성된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이다. 그는 이때 別工作에서 문짝에 돌쩌귀, 고리, 배목 등을 박아서 문틀에 끼워 맞추는 장인인 朴排匠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 私刻曆書發賣事件 이후 작성된 의궤에서 이똥이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이똥이와 이똥이가 동일인물이라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다. 자격장이 정교한 자격루의 여러 장치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맡은 재주가 많고 노련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격장 이똥이는 앞서 여러 의궤에서 보듯 다양한 기능을 지닌 장인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똥이라는 보다 점잖은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왕실사역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4.2 全致學

각수 전치학의 이름이 보이는 의궤는 모두 5종이다. 그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의궤는 영조 27년(1751)에 작성된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이다. 도서관에 보낸 甘結에 그의 이름이 실려 있는데, 전체 25명 각수 중에서 스물세 번째로 등장하며, 그의 이름은 앞선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치학이 아닌 김치학(金致學)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그의 이름이 보이는 의궤는 영조 29년(1753)에 작성된 『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이다. 여기서 전치학은 諡竹冊과 銀印 등의 제작을 담당한 冊印造成所의 각수로서 김수해 등 18명과 더불어서 工匠秩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유도창 다음으로 열 번째에 그 이름이 나온다. 그의 이름은 삼년 뒤 영조 32년(1756)에 작성된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에서도 보이는데, 이때에 그는 校書館에 소속된 각수인 사실이 밝혀져 있다. 玉冊과 竹冊, 玉寶 등 제작을 담당한 一房에 소속이 되어 죽책을 새긴 그는 그 이름은 전체 16명의 죽책각수 가운데 김석재 다음으로 열한 번째에 나온다.

전치학의 이름은 다시 삼년이 지난 후 영조 35년(1759)에 작성된 『正祖王世孫

冊禮都監儀軌』에 등장한다. 그는 이때에도 一房에서 죽책의 제작을 담당한 것으로 나온다. 그의 이름은 전체 14명의 각수 가운데 김광협 다음으로 열두 번째에 기입이 되어 있다.

전치학의 이름이 보이는 마지막 의궤는 다시 삼년이 지난 영조 38년(1762)의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이다. 이때 그의 이름은 김치학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 二房에 소속해서 죽책을 새긴 16명의 각수 중 한 사람이었다. 석덕숭 다음으로 열두 번째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신분은 私匠인 것으로 나온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치학은 1750년대 초부터 1760년대 초 사이에 校書館에 소속된 각수, 또는 민간각수로서 왕실역사에 참여해서 죽책각수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각수질의 기입순서로 봐서는 원로나 중견각수라기보다는 신진 각수였던 듯하다. 이후 언젠가 그는 관상감의 각수가 되어 책력의 책판을 새기다가 급기야 私刻曆書發賣事件에 연루가 되었고, 사건이 조사되는 와중에 병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 5. 治罪事實

私刻曆書發賣事件에 연루된 것으로 애초에 밝혀진 사람은 주범 이똥이를 비롯해서 이똥개, 전치학, 신성득 등 네 명이였다. 전치학이 사건의 조사 와중에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치죄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똥이와 이똥개, 신성득 세 사람이었는데, 이똥이나 신성득과 달리 이똥개에 대한 처벌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서 치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성득의 경우, 그가 지은 죄가 이똥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논의의 여지가 적어서 처벌이 빨리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는 정조 1년(1777) 5월에 경상도 안동으로 유배를 갔다가,<sup>13)</sup> 5년 반이 지난 정조 6년(1782) 12월에 왕실에

13) 『日省錄』 正祖 1年 5月 11日.

“慶尙道徒年秩(中略)申成得(中略)如何 潑曰 其罪不輕矣減等.”

경사가 겹쳐서 전국적으로 3,127명의 죄인을 방면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서 풀려났다.<sup>14)</sup>

이똥이는 지은 죄가 위중하기도 했지만 정조가 그를 살려주려는 의지가 강해서 치죄의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 그는 정조 즉위년(1776)에 저지른 私刻曆書發賣의 일로 이듬해 정월에 포도청에서 조사를 받고 옥에 갇혔다. 2월말에 그의 범죄 사실을 적은 계목이 형조를 통해 정조에게 올라갔고, 3월 21일에 정조는 사형수에게 적용하는 三覆을 시행하도록 윤허했다.<sup>15)</sup> 정조는 5월 11일에 신하들에게 이똥이가 인신을 위조한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이는 미친 짓에 불과하니 絶島에 귀양 보내어 노비로 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sup>16)</sup>

11월 12일에 이르러 책력과 인신을 위조한 죄로 이똥이를 참형에 처할 것을 형조에서 아뢰자, 정조는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쉽게 해운 일이니 三覆을 기다려 처분할 뜻을 밝혔다.<sup>17)</sup> 11월 18일에 형조에서 이똥이를 再覆한다는 계목이 올라왔고,<sup>18)</sup> 三覆이 있기 전날인 11월 23일에 정조는 홍국영을 불러 이똥이를 살려줄 만한 이유가 있고 법조문을 따져보아도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14) 『日省錄』 正祖 6年 12月 3日.

“判下金吾 秋曹疏決案及吏兵曹歲抄 教曰 義禁府所管鞠廳罪人張志恒(中略) 安東申成得(中略) 竝放.”

15) 『承政院日記』 正祖 1年 3月 21日.

“刑曹啓目 罪人李閔伊 偽造印信 私造歷書 節次既已承款 依法典照律 報議政府 詳覆施行 何如 傳曰 依允.”

16) 『日省錄』 正祖 1年 5月 11日.

“李光點(中略) 李閔伊 仍仍朴斗杓 印信偽造等事 此一律乎 志恒曰 然矣 予曰 既是癡狂 則絶島爲奴 此已足矣 志恒曰 若非癡狂 則重難矣 尙集曰 所犯重大 似難參酌矣.”

17)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12日.

“刑曹啓目 罪人李閔伊 偽造曆書印信罪 依斬律施行啓 傳曰 更待三覆 處分爲良如教.” 『日省錄』 正祖 1年 11月 12日.

“承旨徐迪修 讀李閔伊推案 予曰 非今斯今 易易爲之矣(中略) 尙喆曰 兩罪俱發 當斷以死辟矣 予曰 無傳生之路 則無可疑者乎 命善曰 如犯越之罪 既捉之後 不可容貸矣 命更待三覆.”

18)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18日.

“刑曹啓目 罪人李閔伊 再覆施行啓 傳曰 依允.”

언질을 준다.<sup>19)</sup> 정조가 이튿날인 11월 24일에 熙政堂에 나아가 三覆을 행한 기록은 『日省錄』에 자세하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승지 홍국영이 인신을 위조하고 책력을 사사로이 만든 죄인 이똥이의 첫 번째 공초를 읽어 아뢰었다. (중략) 왕은 이 자는 두 가지 죄가 모두 드러났으니 실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책력을 만드는 도고를 창설한 뒤로 전복의 무리들이 관청의 곡식을 포획한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였으니, 이는 바로 죽을 상황에서 살 길을 찾으려는 계책이며, 이는 명령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뒤에 범하는 자가 있다면 일체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말하였다. 김상철은 오직 임금이 어떻게 재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아뢰었다. 왕이 대체로 도고를 창립한 것 자체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이 무리들이 빛 때문에 법을 범한 것은 곧 백성을 몰아다가 죄에 빠뜨린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참작해서 용서하는 도리가 없을 수 있겠느냐고 이르자, 홍국영은 도고를 혁파하고자 한다면 이는 그 원역들이 이익을 잃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요, 나라에 있어서는 별로 손해되거나 보탬이 되는 일이 없다고 아뢰었다. 왕은 이는 매우 놀라운 일로 훗날 변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20)</sup>

이미 정조가 홍국영뿐만 아니라 다른 정승들과도 의견을 조율한 까닭에 三覆의 자리에서는 다른 의견이 개진될 여지가 없었다. 『正祖實錄』을 보면, 이날 정조가 三覆을 거행해서 책력을 사사로이 만든 죄인 이똥이를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정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21)</sup>

며칠 후 持平 宋銓이 상소해서 이똥이의 죄를 감형한 명령을 거두어들일 것을

19) 『日省錄』 正祖 1年 11月 23日.

“召見樂院副提調 洪國榮于誠正閣 (中略) 予曰 明日即三覆 而諸囚斷死之日也 或慮有冤枉者 詳閱文案 則李暉事 頃與卿已有酬酌 足可有傳生之道 (中略) 國榮曰 聖教誠然矣.”

20) 『日省錄』 正祖 1年 11月 24日.

“御熙政堂行三覆 予曰 諸承旨持文案以次讀奏 承旨洪國榮讀奏偽造印信私造曆書罪人李暉伊 初招詔 命讀結案及照律 予曰 僉議何如 領議政金尙喆 曰此乃兩罪俱發 無他可奏矣 左議政鄭存謙 曰自有當律 別無更奏矣 右議政徐命善曰 依律之外無他道矣 予曰 此是兩罪俱發實難容貸 而自創曆書都庫之後 典僕之以遲欠爲此舉 即是死中求生之計也 此則屬之令前 而付諸生道 此後如有犯者 則一切用法似好矣 尙喆曰 惟在上裁何如矣 予曰 大抵都庫之創立 實非美事 而此輩之因債犯法便同驅 而納之 亦豈無參酌之道乎 國榮曰 都庫令欲革罷 則不過員役輩失利而已 在國家別無損益矣 予曰 此甚駭從後變通好矣.”

21) 『正宗大王實錄』 正祖 1年 11月 24日.

“行三覆 私造曆罪人李同伊 殺獄罪人李彝永 禁中拔劍罪人朴重根 特命減死定配.”

청하였다. 이똥이가 인장과 책력을 위조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단지 임금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사형을 감해 정배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그 죄가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므로 본래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2)</sup> 이똥이의 죄를 감하지 말고 형률대로 처벌할 것을 아뢰는 신하가 그 이튿날에도 있었다.<sup>23)</sup>

그리고 12월 10일에는 이똥이를 정배소로 보내야 하는데, 마야호로 대간의 계가 있으니 잠시 옥에 가둬두겠다는 계문이 형조에서 올라왔고, 정조는 이를 허락하였다.<sup>24)</sup>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신하들이 이똥이를 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정조에게 아뢰었다. 10개월간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8차례에 달했다. 정조 2년(1778) 10월 28일의 것이 109번째 기록인데, 이때에도 정조는 윤허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 이튿날인 10월 29일 이똥이 일은 ‘物故停啓’로 마무리가 된다.<sup>25)</sup> 하룻밤 사이에 이똥이가 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결국 그에 대한 치죄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정조는 자격장인 이똥이를 참형에 처하거나 정배하지도 않고 그가 투옥된 채 죽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22) 『日省錄』 正祖 1年 11月 28日.

“持平宋銓疏 請還收重根酌處之命 仍乞遞 賜批 疏略曰 臣於朝筵傳啓退出之後 始得見三覆時下該曹判付文案 則重根之闕庭抽刃 李彝永之白晝殺人 李暉伊之偽造印曆 俱係罔赦之律 而只以我聖上好生之德 意皆有減死定配之命 今此三囚罪在必死 臣謂竝還收酌處之命 一依本律勸斷所不已也 臣新從外土漠 未聞知倉卒登筵 未及論啓言既後時罪著溺職 乞削臣職以安微分 批以爾其勿辭察職.”

23)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1月 29日.

“丁酉十一月二十九日巳時 上御熙政堂 晝講 大臣備局堂上同爲入侍 (中略) 請還寢禁庭 拔劍罪人朴重根 殺人罪人李彝永 偽印曆罪人李暉伊 減死之命 依律處斷 上曰 不允.”

24) 『承政院日記』 正祖 1年 12月 10日.

“李秉模以刑曹言啓曰 啓覆酌處罪人李彝永李暉伊奴重根等 已準三次之刑 所當定配所發配 而方有臺啓 姑爲嚴囚之意 敢啓.”

25) 『承政院日記』 正祖 2年 10月 29日.

“李暉伊事 物故停啓.”

## 6. 結 論

조선시대에 책력의 발행은 관상감의 독점 사업이었고, 그 수익으로 관상감 인원의 인건비를 지불했다. 자격장 이똥이, 각수 전치학, 인출장 신성득이 참형이라는 엄중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관아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 할 부분이 없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치학과 김치학, 이똥이와 이동이는 단순한 오기이며,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료 장인의 명단, 기입순서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전치학은 관상감의 각수가 되기 전에는 교서관의 각수 및 민간각수로 활동하였으며, 왕실사역에 죽책각수로 참여했다.

둘째, 각수 전치학이 사사로이 판각한 책판은 책력에 인신을 날인한 사실과 신성득의 진술을 미루어볼 때, 관상감에서 공식적으로 판각한 책판과 형태적으로 그 진위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많은 부수를 찍어서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똥이와 전치학이 오랜 기간, 또는 일정기간 왕실 역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노련한 장인이었고, 그들이 사건의 조사 또는 처벌 중에 병사, 또는 옥사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과연 그들이 私刻曆書發賣事件을 저지를 저의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관상감의 이속이 책력의 발매에 간여했고, 구조적인 책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單曆의 보급이 일반화된 사실로 미루어 私刻曆書發賣의 일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私刻曆書發賣事件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책력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印曆所나 都庫의 설치와 같은 개혁적 조치가 있었으며, 특히 정조가 즉위 초에 설치한 冊曆都庫는 부작용으로 일 년 만에 철폐되었는데, 그러한 제도 변혁기에 관계적인 私刻曆書의 發賣 일이 사건으로 비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섯째, 정조는 私刻曆書發賣事件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군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드러났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개 장인에 대한 감형의 근거를 찾기 위해 혼자 밤을 지새웠고, 백 차례가 넘는 신하들의 주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둔 채 때를 기다렸다. 정조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결정이 아니면 '李罷伊獄' 소위 '私刻曆書發賣事件'은 단지 소수 장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한 사건, 또는 극히 사소하거나 무모한 사건의 하나로 어떠한 주목도 끌지 못하고 기록으로 묻힐 일이었다.

### <참고문헌>

- 『經國大典』
- 『端敬王后復位祔廟都監儀軌』
- 『大典會通』
- 『書雲觀志』
- 『璿源譜略修正時宗簿寺儀軌』 1751.
- 『淑嬪上諡封園都監儀軌』
- 『承政院日記』
- 『辛亥啓下觀象監釐正節目』
- 『審理錄』
- 『英祖王世弟冊禮都監儀軌』
-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 『仁元王后淑嬪英祖貞聖王后尊崇都監儀軌』
- 『仁祖長陵遷陵都監都廳儀軌』
- 『日省錄』
-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 『正宗大王實錄』
- 『正祖王世孫冊禮都監儀軌』

書誌學研究 第66輯(2016. 6)

『正祖孝懿王后嘉禮廳儀軌』

『孝章世子冊禮都監儀軌』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김상호. “觀象監活字考.” 『圖書館學』 14집(1987. 12). 131-148.

김상호. “朝鮮後期の 木板本 日課考.” 『書誌學研究』 4집(1989. 12). 161-174.

鄭誠嬉. “조선후기 曆書의 간행과 배포.” 『朝鮮時代史學報』 23집(2002). 117-144.